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	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중 발생할 법적 문제점 및 그 대		
정책연구과제명	응방안에 관한 연구 - 중국, 베트남, 러시아, 헝가리에 대한 비교법적		
	연구를 중심으로		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 사법정책연구원(판사) 성명 오세용		
연 구 자	법무법인 세종(책임연구원 : 조용준)		
연구기간	2016. 7. 21. ~ 2017. 4. 20. (6개월+3개월)		
연 구 금 액	38,5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
계 약 방 법	□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☑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		
연구결과	○ 중국, 베트남, 러시아, 헝가리 등 각국의 체제전환과정 및 특징 ○ 입법·법제적 측면에서의 비교법적 고찰(위 4개국 비교 검토) ○ 사법·법치적 측면에서의 비교법적 고찰(위 4개국 비교 검토) ○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때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대응방안 검토		
평가항목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0		
내용의 완결성		0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0		
참고문헌의 충실도		0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0		
제출기간 준수		0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0	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0		
평가 결과 총평	별지와 같음		
공개 여부	☑ 공개 □ 비공개		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		
	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		
2017. 9. 18.			
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		

평가결과 총평

- ◎ 각국의 체제전환과정 및 특징
- 중국
- 1978년부터 개혁·개방정책의 실시
-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
- 베트남
-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의 시행
-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
- 러시아
- 1980년대 후반기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 정책의 시행 및 구 소련 붕괴
- 급격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, 에너지산업 등의 재국유화
- 헝가리
-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민주화, 유럽연합 및 나토 가입
-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서구식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
- ◎ 입법·법제적 측면에서의 비교법적 고찰
- 1.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법제
 - 중국, 베트남 :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, 토지사용권제도의 도입
 - 러시아, 헝가리 : 토지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, 물권법(민법) 및 공시제도 정비
- 2. 기업 관련 법제
 -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 : 특혜제공 => 국내·외기업간 평등
 - 파산법 분야 : 국영기업 => 민영기업, 개인 등
 - 노동법 분야 : 노동법 불요 => 노동법 제정, 노동자 권익 보장
 - 경쟁법 분야 : 독점규제 필요성 낮음 =>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독점 지위 문제
- 3.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
 - 특허, 실용신안 분야 : 권리별 개별법령(중국, 헝가리), 통합법령(러시아, 베트남)
 - 상표법 분야 : 보호수준 높음(헝가리) > 낮음(중국, 베트남, 러시아)
 - 저작권 분야 : 국제조약 가입, 법령 정비 완료, 저작권 보호 인식 낮음
- 4. 조세 관련 법제
 - 조세제도의 변화 : 국영기업 등의 운영 수입 => 민간부분에 대한 조세 부과
 - 개인에 대한 과세 : 소득세, 재산세 등
 - 기업에 대한 과세 : 내·외자기업 간 차별 => 동일 세율 부과

- 5. 정부 구조 개편 및 신규 공공기관의 설치
- 정부 구조 개편 : 공산당 주도(중국, 베트남), 당으로부터 국가 독립성 강조(헝가리), 중앙집권화(러시아, 베트남), 지방정부·경제특구에 대한 권한 이양(중국)
- 신규 공공기관의 설치 : 국유자산관리위원회(중국), 계획투자부(베트남), 국가재산관리국(러시아), 국가재산청(헝가리)
 - 6. 인프라시설의 개혁
 - 막대한 투자비용 v. 높은 공공성 => 재정적자 감수,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
 - 자금 마련 방법 : 민간 투자, 외국인 투자,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등
 - 투자 회수 방법 : 제도 일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, 법적·제도적 안전보장장치 마련
- ◎ 사법·법치적 측면에서의 비교법적 고찰
- 1. 사법제도의 개혁
- 사법기관의 위상 : 공산당 내지 전인대(인민회의)의 지도, 감독을 받음(중국, 베트 남), 당이나 정부로부터의 독립(러시아, 헝가리)
- 문제점 : 재판의 불공정, 법관의 업무과중 및 보수 부족, 지역세력과의 유착(중국), 법관의 자질, 능력 불충분(베트남), 법관의 청렴도, 사법부의 보수화(러시아, 헝가리)
- 2. 법치주의의 확립
 - 중국 : 권력분립 부정, 당과 입법기관에 의한 법원에 대한 감독, 검찰의 항소
 - 베트남 : 사회주의 법치국가 천명, 헌법과 법률 안에서 공산당에 의한 영도 원칙
- 러시아 : 형식적으로 삼권분립,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수직적 통합
- 헝가리 : 사법개혁방법을 통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개입, 헌법재판소의 권한 약화,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
- 3. 법조인 양성 시스템
- 중국 : 통합 사법고시, 법원·검찰 등 직역별 선발 시험, 국가법관학원·국가검사학원 연수
- 베트남 : 법학학사 취득, 법원/검찰공무원 재직(4~5년이상), 법관/검사 자격시험, 프랑스·일본·한국·노르웨이 등의 법률교육 지원
- 러시아 : 6년의 법학교육, 유관기관 실무수습, 법관임용시험, 변호사의 종류(유리스트 : 석사 논문심사 및 국가시험 통과 요, 아드보카트 : 2년 이상 경력, 별도 시험, 형사 변론 가능)
- 헝가리 : 5년의 로스쿨 과정(9학기), 사법연수원(판사연수생 선발), 판사연수생(최소 3년간, 20개 시험 통과 요), 법률전문가 시험, 재판연구관, 재판연구관 중에서 판사 임명

- ◎ 북한에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얻을 시사점
- 1.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법제
- 토지제도의 통합, 국유재산의 사유화,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문제
- 2. 기업 관련 법제
-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뢰보장, 통일 직후 사유화과정에서 독점규제 등 개입조치 필요, 통일 이후 개성공단 노동규정 등 경험 활용,
- 3.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
- 동시 가입된 국제조약을 통한 상호 보호 및 교류를 통해 통일화 모색
- 4. 조세 관련 법제
- 조세법률주의 확립, 조세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, 상사법 체제의 정비
- 5. 정부 구조 개편 및 신규 공공기관의 설치
- 지방자치제도의 실시, 국유재산의 사유화 전담기관 및 외자유치·투자회수 전담기관 의 설치 고려
- 6. 인프라시설의 개혁
- 투자 유치 노력 및 투자 자본 회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 필요
- 7. 사법제도의 개혁
- 사법기관의 독립, 남북경협지구에서의 특별재판소 설치·운영, 사법공조
- 8. 법치주의의 확립
- 통일 이후 법제통합, 북한 주민들의 법의식 제고,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
- 9. 법조인 양성 시스템
 - 통일 후 남북 간 법조 인력의 통합, 북한 법조인의 재임용·재교육 문제

◎ 총평

-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4개국(중국, 베트남, 러시아, 헝가리)의 경험은 향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인데, 위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입법·법제적 측면, 사법·법치적 측면에서 종합적·망라적으로 소개하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
- 한반도 통일과정 중에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능하고, 관련 사법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체제전환과정을 거친 주요 4개국의 경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·분석하고 집대 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, 통일사법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(공개 가능)